<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u>
<u>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5020			
최초 등록일	2021.11.11	최종 등록일	2025.03.05	



화화돈(花和豚) 정보공개서

[㈜위드컴퍼니에이치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정력이 없는 경우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대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드컴퍼니에이치앤비

대	丑	번	호	07	0 - 5	029	-44	06	팩	스	번	호	070-8255-4411
가 맹	사 업	운 영	부서	가	맹	사	업	부	가 명	부서	전 화	번호	070-5029-4406
주			소		서	울특투	별시	강북	구 덕	릉로 1	01, 20)2호(박	번동, 서울빌딩)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민원참여'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사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 [㈜위드컴퍼니에이치앤비의 "화화돈(花和豚)"]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화화돈(花和豚)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2019년 08월 28일	사업자 등 록일	2019년 08월 28일
법인등록번호	110111-7217527	사업자등록번호	140-88-01606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	호	/		이		름	대	丑	자	대	丑	번	호
가 맹 본 부	(주	위드컴퍼	퍼니ㅇ	케이츠	네앤비	1]		,	정민섭]	070	0-502	29-44	06
특수관계인 (임원)	정민섭(장영권(윤혜련(2	사내이		영 화호	업 화돈(외	班 花和 1	<u>ス</u> 豚)	서			주소 강북구 번동,	- - - 덕등	블로 1(빌딩)	01,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 회사를 말합니다.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없습니다.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화화돈(花和豚)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관련정보	BI
화화돈 (花和豚)	화화돈(花和豚) 00점 (해당 지역명 표기)	I -10.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참조	で ポール 一川 不 日 で 日 で 日 で 日 で 日 で 日 で 日 で 日 で 日 で 日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3,360,337	2,012,237	1,348,099	12,388,848	687,536	689,294
2023년	5,224,091	2,980,680	2,243,410	16,287,173	942,780	895,310
2024년	준비중					

- * 정보공개일 현재 2024 년 재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4 년도 재무현황은 정보공개일 현재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 년 3월말 신고 이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일 현재 2024 년 재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4 년도 재무현황은 정보공개일 현재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 년 3월말 신고 이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1	11-u	-1 A)		개인별 사업경력	
관련여부	성명	직위	사업기간	사업내 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정민섭	대표이사	2019.08~현재	㈜위드컴퍼니에이치앤비	경영전반
관련임원	장영권	사내이사	2022.08~현재	㈜위드컴퍼니에이치앤비	경영일반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윤혜련	감사	2019.08~현재	㈜위드컴퍼니에이치앤비	감사

8.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2024년 12월 31일	상근	비상근	준비중
	2	1	2 70

^{* 2024}년 말 직원 수는 2025년 2월에 신고 예정이므로, 정보공개일 현재 제공할 수 없습니다. 2월 신고 이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화화돈(花和豚)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사업명(정보공개서등록번호)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위드컴퍼니에이치앤비	미도인(味道人) (20200343)	2020.02.20~현재	기타외식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화화돈(花和豚)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견본이미지	출원일자	출원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서비스표	電 だボール [1]	2023.09.27	4020230177052	㈜위드컴퍼니 에이치앤비	출원	
권리범위	가맹점 상호로 사용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화화돈(花和豚)'과 관련된 상표서비스표를 출원중에 있습니다.
-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Ⅱ.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화화돈(花和豚)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21년 10월 22일입니다. 직영점 시작일은 2021년 02월 01일입니다.,

2. 화화돈(花和豚)의 연혁

화화돈(花和豚)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드컴퍼니에이치앤비	화화담(花和談)	정민섭	2021.10.22. ~2024.11.24.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01, 202 호 (번동, 서울빌딩)
㈜위드컴퍼니에이치앤비	화화돈(花和豚)	정민섭	2024.11.25.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01, 202 호 (번동, 서울빌딩)

3. 화화돈(花和豚)의 업종

화화돈(花和豚)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화화돈(花和豚)	기타외식	화화돈 쌀국수, 매운 하노이 쌀국수, 화화돈 등심카츠, 화화돈 소바 등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화화돈(花和豚)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화화돈(花和豚)의 전국 및 광역지방 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2	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717	전체	가맹점	직영	전체	가맹점	직영	전체	가맹	직영점
전체	3	2	1	2	1	1	준비중		
서울	3	2	1	2	1	1			
인천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경북 경남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 당사는 2024 년도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일 현재 2024 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 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화화돈(花和豚)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화화돈(花和豚)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년	3	0	0	1	0	2
2023년	2	0	1	0	0	1
2024년	준비중					

* 당사는 2024 년도의 가맹점 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일 현재 2024 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 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6. 기타 가맹사업현황

화화돈(花和豚)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정보공개서	가맹:	점 및 직영	형점 수
구분	상호/이름	업종	영업표지	등록번호	2022. 12.31.	2023. 12.31.	2024. 12.31.
가맹본부	㈜위드컴퍼니 에이치앤비	기타 외식	미도인(味道人)	20200343	22/3	26/6	준비중

* 당사는 2024 년도의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 관련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일 현재 2024 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 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당사는 화화돈(花和豚) 2024 년도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에에 관한 정보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일 현재 2024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정기변경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2024 년	2024년 기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대출액(단	위:천원,VA	T미포함)	산출
지역	말 가맹점	연간 평균	· 구 매출액	연간 평균 1	개출액(상한)	연간 평균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가맹점 수
전체	_			준비	중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_							
광주	-							
대전	_							
울산	-							
경기	-							
강원	_							
충북	_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_							
경남	_							
제주	-							
세종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년	준비중	

* 당사는 2024 년도의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에 관한 정보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일 현재 2024 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 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화화돈(花和豚)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 정보공개일 현재 2024 년 재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4 년도 광고판촉 지출내역은 정보공개일 현재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 년 3 월말 신고 이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수 단	내 용	기간 및 일자	지출금액 (단위:천원/VAT 미포함)
광고	비공개	2024.01.01~2024.12.31	
판촉	비공개	2024.01.01~2024.12.31	
합계		준비중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수유역지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9-1	02-990-5109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화화돈(花和豚)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19(21 7144)/1 8/		701 772 71	
구분	내역	금액 (단위:원/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선정 점포 실사의 대가 3.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4.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11,000,000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2명)	5,5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개점 비품	개점 비품	2,200,000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개점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POS 설치비	POS 시스템 설치 및 관리	2,200,000	개점 이후 반환 안됨	개점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단위:원/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1.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인력지원의 대가 2. 홍보지원비	5,500,000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양수 전 교육비(2명)	5,5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없습니다.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유	년/VAT 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20,900,000	11,000,000
가맹비	11,000,000	5,500,000
교육비	5,500,000(2 명)	5,500,000
개점비품비	2,200,000	_
POS 설치비	2,200,000	-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화화돈(花和豚)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기준면적 99m²/단위:원/VAT 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방법	반환조건/반환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설비		66,000,000	2,200,000		
간판 및 사인물		6,425,000	약215,000		
설비	정보공개서	24,640,000	약822,000	계약	사이비용 고레 중
집기	V-1 의	9,350,000	약312,000	체결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소모품비	거래상대방	1,850,000	약62,000	개별계약	민완
개점홍보비		2,750,000	약92,000		
의탁자		8,075,000	약270,000		
합계	-	119,090,000	3,969,667	-	-
가맹점	사업자 진정시	곳 및 뭌풎구입	시 검수비: 3 3 m ²	당 330,000	(VAT포함)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²당 330,000 (VAT포함)

마.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	기준 금액(단위:원/VAT 포함)		
25 225 (24) =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예치 가맹금(계약금)	20,900,000		계약 체결 시	
공사계약금	공사 대금의 60%	11 000 000	공사 개시 3일전	
중도금	기타 대금의 30%	11,000,000	공사 개시 15일 후	
잔금	기타 대금의 10%		점포 인계시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면적 3.3 m²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 m²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기준면적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정률로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초도물품비는 별도입니다.

바.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이우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후 가맹점 개점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70%		

*상기 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화화돈(花和豚)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1) 가맹점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			
가맹점희망자	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F병섭의 당사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희망자에게 있습니다.			

아.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	--------------

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별첨2]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개점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자	금 액(단위: 원, 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온·오픈 마케팅 활동 등의 지원 등의 대가	가맹 본부	총매출의 1.1% (부가세포함)	1.1% (부가세포함) 매월 10일	
	수시 교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개점 이후 교육비	특별 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개별 청구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	가맹 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가맹점 사업자 개별 계약 및 사용료 지급(업체:한결포스)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 (장비,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	가맹 본부, 천지 광고, 협력 업체 (미정)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청구	WI-1 참조	
지연 이자	금전지급의무 의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가맹 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VAT별도)

	,,	_
구분(기준:2024 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구금액 준비중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당사는 2024년도의 구입요구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관련 정보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정

보공개일 현재 2024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전산 매출정보수집,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화화돈(花和豚)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화화돈(花和豚)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화화돈(花和豚)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귀하가 당사의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 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품목의 세부 내용들은(원부재료의 품목 및 제조사 포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	단위	공급가격(단위)		구브
正包	5 7	인기	상한	하한	十 一 十 元
			준비중		

* 당사는 2024 년도의 공급가격의 상하한에 관한 정보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일 현재 2024 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 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당사는 2024 년도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정보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일 현재 2024 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 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준비중					

나. 당사가 당사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 도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준비중			

* 당사는 2024년도의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에 관한 정보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일 현재 2024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화화돈(花和豚)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6 전 베이고 두 이고 ᆻ됩니다.	제한내용 및		
메뉴명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오리지널쌀국수(S,R)			
하노이매운쌀국수(S,R)			
맑은해물쌀국수(S,R)			
우삼겹양지쌀국수 (S,R)			
우삼겹양지해산물쌀국수(S,R)			
곱창쌀국수(S,R)			
분팃느엉			
화화돈분짜			
화화돈스페셜분짜			
마제소바			
메밀소바			
새우커틀렛		1 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가맹사업법의
치즈볼			
해물짜조 2	승인받지 않은		해지 절차 준용
해물짜조 4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요구 후 계약 해지	,,,,,,,,,,,,,,,,,,,,,,,,,,,,,,,,,,,,,,,
반미			
가츠샌드			
에비텐			
등심가츠정식			
안심가츠정식			
치즈가츠정식			
등심안심가츠정식			
모듬카츠			
오리지널+등심			
오리지널+ 안심			
매운하노이+등심			
매운하노이+ 안심			

	*	
마제소바+ 등심		
마제소바+ 안심		
메밀소바+ 등심		
메밀소바+ 안심		
콜라		
사이다		
제로콜라		
사이공스페셜 맥주		
하노이프리미엄 맥주		
집빔하이볼		
애플시나몬에이드		
자몽허니 에이드		
갈비쌀국수		
매운갈비쌀국수		
갈비새우쌀국수		
공심채(모닝글로리)		
가츠동		
함박스테이크		
들기름 자루소바		
가츠샌드		
등심돈가스정식		
치즈돈가스정식		
반미		
해물짜조		
수제짜조		
새우커틀렛		
찹쌀치즈볼		

신 제품 출시 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신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며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추가 제품의 구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제품을 구성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지정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사전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전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0 2 2 4 0 111	가맹본부	계열회사	
베트남 음식인 쌀국수와 수비드 스테이크 등을	화화돈(花和豚)	해당없음	
주메뉴로 제공하는 외식업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300m(직경 600m) 범위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 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여억지여 벼겨(아) 자서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화화돈(花和豚)' 영업표지 이미지 등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가. 바로 전 사업연도 화화돈(花和豚)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준비중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화화돈(花和豚)의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준비중	

* 당사는 2024년도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정보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일 현재 2024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 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화화돈(花和豚)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이며, 갱신시에는 2 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D 180 - D 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	
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A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1. +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	
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	
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D-60일 이전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00일 의신

예→E. 아니오→A	
1, 2, 1, 122 22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	
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	
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		
는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		
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7조 2	2항 각호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		
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2항 및 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 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 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조1항 내지 6항
당사의 시정요구와 보수교육이 있은 후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16조 7항 및 8항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조 각호 및 31조 1항 1호	17조 1 항 및 2 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 명의로 경업 또는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12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품질요구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래처요구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조 2항~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 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 9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거래처요구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 조

26 조
27 조 2 항
27 조 6 항
27 2 0 %
28 조
29 조
29 32
30조 2~5항
30 32 2~3 %
30 조 7 항
50조 7 영
35 조 1 항
7 01 중
조 21 호
조 1 항 2 호
도 1 성 2 모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		
③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017	4원 키드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31소	4항 각호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31 조 3 항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31조 2항 각호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가량 소요)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신규가맹계약 조건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 및 겸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 또는 겸업금지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화화돈(花和豚)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화화돈(花和豚)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화화돈(花和豚)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화화돈(花和豚)과 동일한 형태로 일반인에게 쌀국수와 스테이크 등을 제공하는 외식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화화돈(花和豚)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1:30 ~ 21:00	월 28일 이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들의 편의를 위하여 30평 기준, 6명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 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브리저희	
丁亚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브랜드광고	-1 -1 11	광고비의 70% /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공동광고	상품광고 등	광고비의 30%	가맹점사업자수	가맹점부담액 제시(광고1개월 전)→ 제시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가맹점모집광고	100%	_	-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가맹점의 행사참여 여부 결정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는 50%이상, 판촉은 70% 이상의 가맹점사업 자로부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당사는 전체 가맹점주에게 광고비(판촉비) 분담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촉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는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파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 제 18 조 (경업 또는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사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W300,000원)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4항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한다.	제33조 제5항

제33조	제6항
제33조	제7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2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70-5029-4406).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1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제공 14 일 이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1 일	IV.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계약	점포입지 선정점포개발 착수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2 일	급신시급 방법 삼소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2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17~20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3 일	
亚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10 일	
개점	- 개점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개점결정) - 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D-day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ㅇ 점포의 시설,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점포의 확장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 점포환경	
장비 인테리어	ㅇ 인테리어 공사	또는 이전을	청구(공사계약서 등	개선일로부터	
등의 노후화가	비용(장비·집기의	수반하지 않는	공사비용을 증빙할	3년 이내에	
객관적으로 인정	교체비용을 제외	점포환경개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맹본부의	
되는 경우	한 실내건축공사	: 20%	→ 90일 이내에 가맹	책임없는	
ㅇ 위생이나 안전의	에 소요되는 일체	ㅇ 점포의 확장	본부 부담액을 가맹	사유로	
결함으로 인하	의 비용. 단, 가맹	또는 이전을	점사업자에게 지급	계약이	
여 가맹사업의	사업의 통일성과	수반하는	(단, 가맹본부와	종료(계약의	
통일성을 유지하	무관하게 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가맹점사업자간 별도	해지·영업	
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추가 공	: 40%	의 합의가 있는 경우	양도 포함)	
정상적인 영업에	사를 실시함에		1년의 범위내에서	되는 경우	
현저한 지장을	따라 소요되는		분할지급 가능)	가맹본부	
주는 경우	비용은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부담액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	잔여기간에	
			본부가 지정한 자를	비례하는	
			통하여 점포환경개	부담액은	
			선을 한 경우에는 점	지급하지	
			포환경개선이	아니하거나	
			끝난 날부터 90일	이미 지급한	
			이내에 가맹본부	경우에는	
			부담액을 지급	환수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
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화화돈(花和豚)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운영, 상품 교육	집단강의	가맹계약체결 후	필수교육
211 亚当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실습교육	1 개월이내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화화돈(花和豚)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개별협의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보수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컴플레인 개선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개점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10일	5,500,000(2명)	최초 계약시

		2인 이외에 추가1인 교육시 330,000원 추가.	이수
수시 교육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E H 70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특별 교육		협의 하여 산정	
	개별협의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필요시 실시
재교육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ロ ク コ O		고객 컴플레인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개별사안	
보수교육		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및 주방담당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준비중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4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준비중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VAT 미포함)

2024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준비중	

* 당사는 2024년도의 직영점 운영에 관한 정보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일 현재 2024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정기변경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변경등록한 이후 제공됩니다.

끝

<u>별첨 1 재무현황</u> <u>재무상태표</u> 2022 년, 2023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u>손익계산서</u> 2022 년, 2023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1. 인테리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간판 및 사인물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설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4. 집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5. 소모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필수품목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합니다.
- *상기 내역중 공급업체 권장품목을 지정 공급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받을 경우 반드시당사가 정한 사양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강제품목 관련 정보는 가맹계약서 제 37조 및 제 37조의 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